

- 2014. 주민참여예산사업 -

성북구 공정무역 전시·홍보관 운영 동행 협약서(안)

성북구(이하 “동(同)”이라 한다)와 (주)페어트레이드코리아(이하 “행(幸)”이라 한다)는 2013.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(2013.7.26.~27.)를 통하여 선정된 「서울특별시 2014. 주민참여예산사업」에 따른 「성북구 공정무역 전시·홍보관」(이하 “홍보관”이라 한다) (변경전 사업명 : 지역사회 네트워크형 공정무역 매장 설립) 사업비 집행 및 홍보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행(同幸)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“동(同)”과 “행(幸)”간에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“동(同)”과 “행(幸)”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의 성실의 원칙) “동(同)”과 “행(幸)”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,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3조(관리시설 및 물품 등) ① 사업기간 중 “행(幸)”이 관리하는 “동(同)”의 시설 및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홍보관의 시설 관리 및 공정무역 매장 운영 등 사업운영 전반

② “행(幸)”이 제1항에 의하여 관리하는 시설 및 물품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내 용
시 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설명 : 성북구 공정무역 전시·홍보관 ○ 위 치 :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22길 33-8 (동선동1가) ○ 규 모 : 지상2층, 연면적 67.37㎡
물 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 비품 일체

제4조(사업기간 등)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(2014. 주민참여예산사업기간)

② “행(幸)”은 사업기간 종료 후 홍보관 운영과 관련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, “동(同)”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다른 신청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.

제5조(관련시설 관리) ① “행(幸)”은 제3조제2항에 의한 시설을 관리·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,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“행(幸)”은 관련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, 시설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, 양도, 전매, 대여, 교환하거나 그 권리를 위탁할 수 없다.

제6조(사업실행계획) 2014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된 “행(幸)”은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“동(同)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업시행) ① “행(幸)”은 제6조에 의거 제출한 실행계획서에 따라 “사업”을 시행 하여야 한다.

② “행(幸)”은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, “사업”을 통해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업의 수행) ① “행(幸)”은 서울특별시 2014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.

② “행(幸)”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협약이행의 보증 등) ① “행(幸)”은 사업기간 동안 이 약정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“동(同)”이 지급하는 사업비의 1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“동(同)”을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“동(同)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동(同)”은 “행(幸)”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“동(同)”에 귀속시킨다.

③ “행(幸)”은 사업비를 집행하는 회계전담 담당자에 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재정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정보증보험증권 원본을 “동(同)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원내용) “동(同)”은 다음과 같이 “사업”의 수행을 위하여 “행(幸)”에게 보조

금을 지원한다.

▷ 사업명 : 성북구 공정무역 전시·홍보관(공정무역 매장설립) 운영

▷ 지원금액 : 금50,000,000원(금오천만원)

▷ 보조금 지원기간 : 협약일 ~ 2016.12.31

▷ 사업내용 : “사업(실행)계획서” 첨부

제11조(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) ① “동(同)”은 사업 실행계획서에 따라 보조금을 월별로 교부한다. 단, 사업별 특성이나 사업내용에 따라 교부금액을 증감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행(幸)”은 사업 실행계획서에 따른 별도 교부 신청서를 “동(同)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행(幸)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“동(同)”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,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까지 관련 사업계획, 소요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“동(同)”에 청구한다.

③ “동(同)”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까지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교부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통해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한다.

④ “동(同)”은 보조금을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에 준하여 지출하여야 한다.

⑤ “동(同)”이 “행(幸)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,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.

⑥ “행(幸)”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금액이나 하위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“동(同)”에게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⑦ “행(幸)”은 보조금 통장을 성북구금고 지정금융기관(우리은행)에 법인 명의로 개설하고,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 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며, 사업비 지출은 세부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. 또한 자부담사업비는 보조금과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⑧ 보조금은 “행(幸)”의 상근인력이나 “행(幸)”의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⑨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(2016.12.31.)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, 다음 회계연도(2017.1.1.)에는 집행할 수 없다.

제12조(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) ① “행(幸)”은 “동(同)”이 교부한 보조금에

대하여 분기별 연 2회 정산서를 작성(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)하여 매분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“동(同)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동(同)”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“행(幸)”에게 보완·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“행(幸)”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“행(幸)”이 보완·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“동(同)”은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.

③ 정산결과 당해 분기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, “동(同)”은 다음 분기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. 만일 “행(幸)”이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(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)를 “동(同)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3조(정산 및 보고) ① “행(幸)”은 “동(同)”이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주관 부서의 요구에 따른 기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잔액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행(幸)”은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“동(同)”의 승인을 얻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손해배상 등) ① “행(幸)”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·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② “행(幸)”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한 경우 “동(同)”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

③ “행(幸)”은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“행(幸)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“동(同)”이 사전에 손해배상한 경우에는 “행(幸)”은 “동(同)”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5조(보험가입) “행(幸)”은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,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시설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(배상책임보험)에 가입하고 시설 입주 후 한 달 이내 “동(同)”에게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(협약의 해지) ① “행(幸)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“동(同)”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사업 기간 만료일 전임에도 “동(同)”과 “행(幸)”이 협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
2. “행(幸)”이 관계법규 또는 관련 조례를 위반한 때
3. 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
4.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
② “동(同)”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“행(幸)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“행(幸)”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갖는다.

제17조(관련시설 등의 원상회복) ① 사업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“행(幸)”은 관련시설(사업기간 중 취득한 시설, 장비 등도 포함)을 원상회복하여 “동(同)”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. 단,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“동(同)”과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“동(同)”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.

② 사업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“행(幸)”은 사업과 관련하여 “행(幸)”이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,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“동(同)”에 즉시 반환한다.

제18조(“행(幸)”의 정보공개) ① “동(同)”은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“실행계획서”와 회계, 정산 내용을 포함한 “최종 결과보고서” 및 각종 보고서를 “동(同)”, 서울시 사회적경제과,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·활용할 수 있다.

② 제①항의 정보공개 시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③ 특별히 “행(幸)”의 신상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19조(협약서의 효력 등)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사업이 개시되는 날부터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. 다만, 사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, 사업정산 등 인수·인계가 종료되지 않았거나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

·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, 지도·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·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이 협약서의 관련 규정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.

② “행(幸)”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“동(同)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0조(준용)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,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

이 협약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“동(同)”과 “행(幸)”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월 일

“동(同)” 성북구청

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
성북구청장 김 영 배 (인)

“행(幸)” (주)페어트레이드코리아

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45,3층(녹번동)
대 표 이 미 영 (인)